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의안 번호	2024 - 1
----------	----------

제안년월일: 2024년 1월
제안자: 강서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등촌1종합사회복지관·등촌7종합사회복지관·등촌9종합사회복지관·방화6종합사회복지관·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함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무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규모)	직원 현황	現 위탁현황		
				수탁법인명	대표	수탁기간
등촌1종합 사회복지관	강형태	강서로68길 36 (3,720㎡)	19명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정인호	2019. 7. 1. ~ 2024. 6.30. (5년)
등촌7종합 사회복지관	이철우	공항대로43길 104 (2,590㎡)	19명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유경춘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김기철	화곡로63가길 92 (1,846㎡)	19명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김춘상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김성미	금녕화로23길 25 (1,742㎡)	19명	재단법인 귀뚜라미복지재단	김미혜	
방화11종합 사회복지관	권순범	개화동로21길 4 (2,712㎡)	19명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김인복	

나. 위탁사무 내용

-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다. 위탁기간: 5년(2024. 7. 1. ~ 2029. 6. 30.)

라. 수탁자 선정방식: 민간위탁 재위탁 공개모집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별첨1】**

- 총 소요액 38,596,608천원(시비100%)

(단위: 천원)

기관명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고
합계	38,596,608	32,645,236	4,507,544	1,443,828	
등촌1종합 사회복지관	7,754,271	6,404,353	1,013,438	336,480	노인특화사업 (192,000)
등촌7종합 사회복지관	7,786,363	6,765,957	873,526	146,880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7,695,548	6,719,979	826,889	148,680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7,727,500	6,186,665	873,526	667,308	이동목욕사업 (524,028)
방화11종합 사회복지관	7,632,926	6,568,282	920,164	144,480	

※ 산출방식 :매년 3% 증가율 반영(인건비 및 운영비)

3. 관련근거 **【별첨2】**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4. 추진일정

- 가. 2024. 1.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
- 나. 2024. 1.~ 2. : 구의회 동의안 상정
- 다. 2024. 2.~ 3.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라. 2024. 4. : 신청법인 조회
- 마. 2024. 5. : 수탁자 선정 심사
- 바. 2024. 6. : 위·수탁 협약 체결

5. 기타 참고사항 :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별첨3】

(별첨1)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산출방식 :매년 3% 증가율 반영(인건비 및 운영비)

기관명	연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 소요예산		38,596,608	32,645,237	4,507,544	1,443,828
등촌1종합 사회복지관	합계	7,754,271	6,404,353	1,013,438	336,480
	2024	1,202,852	990,097	156,675	56,080
	2025	1,237,255	1,019,800	161,375	56,080
	2026	1,272,690	1,050,394	166,217	56,080
	2027	1,309,189	1,081,906	171,203	56,080
	2028	1,346,782	1,114,363	176,339	56,080
	2029	1,385,503	1,147,794	181,629	56,080
등촌7종합 사회복지관	합계	7,786,363	6,765,957	873,526	146,880
	2024	1,205,525	1,046,000	135,045	24,480
	2025	1,240,956	1,077,380	139,096	24,480
	2026	1,277,451	1,109,701	143,269	24,480
	2027	1,315,040	1,142,992	147,567	24,480
	2028	1,353,757	1,177,282	151,994	24,480
	2029	1,393,635	1,212,601	156,554	24,480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합계	7,695,548	6,719,979	826,889	148,680
	2024	1,191,507	1,038,892	127,835	24,780
	2025	1,226,509	1,070,059	131,670	24,780
	2026	1,262,561	1,102,161	135,620	24,780
	2027	1,299,694	1,135,225	139,689	24,780
	2028	1,337,942	1,169,282	143,879	24,780
	2029	1,377,336	1,204,361	148,196	24,780

기관명	연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합계	7,727,500	6,186,665	873,526	667,308
	2024	1,202,706	956,443	135,045	111,218
	2025	1,235,451	985,136	139,096	111,218
	2026	1,269,178	1,014,690	143,269	111,218
	2027	1,303,916	1,045,131	147,567	111,218
	2028	1,339,697	1,076,485	151,994	111,218
	2029	1,376,552	1,108,780	156,554	111,218
방화11종합 사회복지관	합계	7,632,926	6,568,282	920,164	144,480
	2024	1,181,775	1,015,440	142,255	24,080
	2025	1,216,506	1,045,903	146,523	24,080
	2026	1,252,279	1,077,280	150,918	24,080
	2027	1,289,125	1,109,599	155,446	24,080
	2028	1,327,076	1,142,887	160,109	24,080
	2029	1,366,166	1,177,173	164,913	24,080

(별첨2) 추진근거 관계법령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첨3)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복지관	개관일	소유	現 수탁법인			총 수탁 횟수	비고 (변경이력)
			법인명	최초 지정일	수탁 횟수		
등촌1종합 사회복지관	'94.10	LH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1994.10.	8	8	-
등촌7종합 사회복지관	'94.10	LH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2005.10.	5	8	<수탁법인명> 영보수녀회복지재단 <위탁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위탁기간> 최초~2005.10.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94.12	LH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1994.11.	8	8	-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94.10	SH	재단법인 귀뚜라미복지재단	2016. 7.	2	8	<수탁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위탁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위탁기간> 최초~2008.8.
방화11종합 사회복지관	'94.06	SH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1994. 7.	8	8	<수탁법인명>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 <위탁차수> 5회차, 6회차 <위탁기간> 2008.9.~2016.6.